

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
(이기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61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9.

발 의 자 : 이기현 · 문진석 · 홍기원  
허 영 · 전현희 · 김용만  
백승아 · 김 윤 · 진성준  
장철민 · 권향엽 의원  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예술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 1월에 “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”을 통해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.

이에 예술인의 복지 및 권익보호 정책 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4조의3).



##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3제1항 본문 중 “3년마다”를 “2년마다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의3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가 그 결과를 공포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.



